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부가가치세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 신설(안 제11조)

나. 다음의 부가가치세 관련 조례는 부칙으로 개정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III. 검토의견

- 2007. 1. 1.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 및 운동시설 운영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제38조제3호 신설)되었는데, 이는 유사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이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테니스장 운영개선을 위한 개인강습료 인상 및 부가가치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1) 테니스장 개인강습료를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였는데, 테니스장 전체 운영수지면에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으나,

※ 삼척테니스장 운영수지 현황(최근 5년간)

(단위: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 입	140,210	152,668	125,156	127,368	88,937
지 출	154,099	155,194	116,954	110,183	93,583
수(△)지	△13,889	△2,506	8,202	17,185	△4,646

- 2006년은 저류조공사(4월~8월) 시행으로 수입 감소

개인강습의 경우 타 자치단체 시설 및 유사업체에 비해 회비가 20~30% 낮을 뿐 아니라, 총 강습료의 70% 지급하는 강사료가 타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강습료 인상을 통해 우수 강사 영입은 물론 시설운영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별첨 “유사기관 요금 및 강사료 현황” 참조>

2) 부가가치세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체육시설운영업 관련조례 4건에 대해 일괄개정 하였는데, 조례개정시 개정 대상 조례별로 따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정조례의 부칙에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할 수 있고, 관련조례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같은 내용을 별도로 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IV.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第12條 (免稅) ① 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值稅를 免除한다.

17.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 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신설)

유사기관 요금 및 강사료 현황

구 분	강습일	월 회비	강 사 료		비 고
			지급형태	지급액(월평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4회	12만원	비율제7:3	150만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월곡구민테니스장)	주4회	15만원	코치재량	300만원	위탁관리
안양시 공공테니스장	주4회	15만원	코치재량	200만원 이상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4회	12만원	비율제6:4	250만원 이상	기본급 1,000천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주4회	15만4천원	비율제6:4	200만원 이상	
송파구 테니스연합회	주4회	15만원	비율제7:3	250만원 이상	
베어테니스 클럽	주4회	16만원	비율제7:3	250만원 이상	인근업체
대원테니스 클럽	주4회	17만원	코치재량	300만원 이상	인근업체